

# 원전기업 인증제도 운영규정

2024. 1. 30. 제정  
2024. 5. 9. 개정  
2024. 9. 9. 개정  
2025. 11.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원전기업 인증제도(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전기업 인증”이라 함은 원자력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협회의 인증 지정요건을 만족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원전기업 인증 취득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3. “인증교육”이라 함은 신청기업의 인증심사 수검을 위하여 신청기업 경영진이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한다.
4. “인증심사”라 함은 신청기업의 원전사업 이해와 수행역량의 정도를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서류심사”라 함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현장심사”라 함은 원전기업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이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인증기업”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로부터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말한다.
8. “인증서”라 함은 원전기업 인증 취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협회가 원전기업에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9. “연장심사”라 함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협회가 실시하는 심사로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인증교육) ① 원전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해당 심사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협회가 별도로 공지하여 운영하는 인증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② 인증교육의 일시, 장소, 강의과목, 수강시간 등 세부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인증신청 및 제출서류) ① 원전기업 인증·연장·재발급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별지 1>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3> 연장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② <별표 2> 인증 심사표의 각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별 대상 또는 실적 기준에 대해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제5조(원전기업인증심사위원회) ① 협회는 원전기업 인증제도 인증심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원전기업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 1항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회 상근부회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배수 이내로 위원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기업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3. 원전산업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관련 협단체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기타 상근부회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6. 원전기업 인증제도 담당 부서장(당연직)

③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회에서 선정하며, 간사는 협회의 인증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인증과 관련하여 회의에 상정된 아래 각 호 및 기타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1. 원전기업 인증 부여·연장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원전기업 인증 부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이의제기 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증심사 체계) ① 인증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서류심사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 인증 심사 배점표에 따른다.

③ 현장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한국수력원자력(주) 유자격 미보유 기업

2. 서류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현장심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인증) 원전기업 인증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 60점 이 상인 기업에 부여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수에 따라 등급과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현장심사의 경우 제11조의2 제3항을 따른다.

1. 85점 이상 : 1등급 (골드)

2. 75~84점 : 2등급 (블루)

3. 60~74점 : 3등급 (그린)

제8조(인증서 교부 및 활용) ① 위원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신청기업을 심사, 인증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인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인증 취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업이 교부받은 인증서는 협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지원사업 및 구매제도 운영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와 활용 방법은 각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증 취소) ① 협회는 인증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4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점검을 시행하고 취소를 심의할 수 있다.

1. 인증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원전산업 발전을 저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2. 정부, 규제기관 등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상 협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결과 취소가 결정된 경우 협회는 인증기업에 인증자격 상실 및 인증서 반

납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교부받은 원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2. 인증서 재발급 요청에 관한 제반서류 (계약서 등)
3. 인증서 원본
4. 사업자등록증명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2. 인증서 재발급 요청에 관한 제반서류 (계약서 등)
3. 인증서 원본
4. 사업자등록증명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① 원전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 협회가 시행하는 공고일부터 재평가(연장심사 포함)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업은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분리 등으로 경영 여건이 변동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재교부한다.

제11조의2(연장심사 및 유효기간 특례) ① 인증기업이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 <별지 1> 및 <별지 3>에 따른 연장신청을 완료한 경우, 연장심사가 종료되어 연장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이 승인된 때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종전 인증서의 만료일 다음 날로 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업이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다음 분기까지

는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유효기간 기산일은 종전 인증서 만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연장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때 종전 인증서의 만료일과 연장 승인일(결과 발표일) 사이의 기간에는 인증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연장심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본 인증심사와 구분하며, 연장심사 결과가 제7조의 인증 등급 산정 기준상 총점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등급을 유지한다. 종전 인증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이 아니라 재심사 신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심사 및 등급 부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본 인증심사 절차를 따른다.
- ④ 연장심사 결과가 총점 60점 미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협회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업은 보완 후 재심사(본 인증심사)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증비용) ① 원전기업 인증을 위해 인증교육 및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액수는 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 ② 협회는 필요시 인증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신청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비용 보조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은 협회가 별도로 마련하여 충당하며 그 대상과 범위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제1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원전기업 인증제도 운영상 제반 사항의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1****원전기업 인증 심사 배점표**

1. 원자력 안전 리더십	2. 사업수행 역량	3. 업무개선 노력	4. 원전산업 기여도	합계
30점	40점	10점	20점	100점

**별표2****원전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심사표** 원전기업 인증 심사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① 원자력 안전 리더십 (30점)	① 경영진의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도  ② 안전문화 정착 노력도	① 원전기업 인증제도 인증교육 이수 ② 원자력 품질·안전 자체교육 이수 ③ 원자력 품질·안전 외부 위탁교육 이수  ① 시스템/제도 보유 ② 시스템/제도 시행 실적
② 사업 수행 역량 (40점)	① 기술역량 (품질·안전 분야 외)  ② 경영역량  ③ IT 지원 역량	① 외부 기술교육 이수 ② 자체 기술교육 시행  ① 부채 비율 ② 유동 비율 ③ 기업 신용평가 등급  ① ERP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유무 ② 홈페이지 유무 ③ SNS 채널 유무
③ 업무개선 노력 (10점)	① 내부 실적  ② 외부 실적	① 품질/안전/기술 분야 업무개선 실적 ② 연구개발 실적  ①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 원전산업 기여도 (20점)	① 동반성장 노력  ② 사업 수주 노력	①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 실적 ② 원자력 관련 계약 실적  ① 원자력 관련 수출 달성 기업 ② 국내외 전시/시장개척단 참여
⑤ 가점 항목 (5점)	① 국가/공공기관 단체 포상	① 품질/안전 분야 ② 기타 분야
⑥ 감점 항목 (-5점)	① 부정당업체	① 한수원 조달처 등재 기준

□ 원전기업 인증 심사표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원자력 안전 리더십 (30점)	1. 경영진의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도 (20점)	1. 원전기업 인증제도 인증교육 이수 (10점)	경영진	회장, 사장 (대표자)	10점	최대 1건만 인정 (해당 인증심사 기간 종료 전까지 이수 후 수료증 제출)	
				부회장,부사장 (부대표자)	7점		
				전무,상무,이사, 연구소장	5점		
		2. 원자력 품질·안전 자체 집합 교육 이수 (5점)	전직원	75% 이상	5점	최근 3년간 누적 수료인원 기준 (수료자 명단 및 서명부 제출)	
				50% 이상	3점		
				25% 이상	1점		
		3. 원자력 품질·안전 외부 위탁교육 이수(5점)	전직원	50% 이상	5점	최근 3년간 누적 수료인원 기준 (수료증 제출)	
				30% 이상	3점		
				10% 이상	1점		
	2. 안전문화 정착 노력도 (10점)	1. 시스템/제도 보유(5점)	전당	1점	5점	관련문서 제출 (Safety Moment, TBM 등)	
		2. 시스템/제도 시행 실적(5점)	1회당	1점	5점	최근 1년 실적 (근거자료 제출)	
2. 사업 수행 역량 (40점)	1. 기술역량 (20점) (품질·안전분야 외)	1. 외부 기술교육 이수 (10점)	전직원	60%	10점	최근 3년간 누적 수료인원 기준 (수료증 제출)	
				40%	7점		
				20%	5점		
		2. 자체 기술교육 시행 (10점)		9회 이상	10점	최근 3년간 누적 교육회수 기준 (수료자 명단 및 서명부 제출)	
				7회 이상	7점		
				5회 이상	5점		
	2. 경영역량 (14점)	1. 부채 비율(2점)		200% 미만	2점	제출서류 중 재무제표 활용	
				300% 미만	1점		
		2. 유동 비율(2점)		150% 이상	2점		
				100% 이상	1점		
		3.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점)		BB0 이상	10점		
				BB-	8점		
				BB- 미만	6점		
	3. IT 자원 역량(6점)	1. ERP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유무		3점		근거자료 (캡쳐화면 등)	
		2. 홈페이지 유무		2점			
		3. SNS 채널 유무		1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3. 업무 개선 노력 (10점)	1. 내부 실적 (7점)	1. 품질/안전/기술분야 업무개선 실적(5점)	0.5건 이상	5점	최근 1년 실적 (별도산식 적용)
			0.3건 이상	3점	
			0.1건 이상	1점	
	2. 연구개발 실적(2점)	건별 1점	2점	최근 5년 실적	
	2. 외부 실적 (3점)	1.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3점)	특허 건별 0.5점	3점	최근 10년 이내 등록 완료 실적
			실용신안 건별 0.2점		
4. 원전 산업 기여도 (20점)	1. 동반성장 노력(16점)	1.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 실적(8점)	3건 이상	8점	최근 10년 실적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경비 등 원자력 기술과 무관한 서비스 용역 실적 제외)
			1건 이상	5점	
		2. 원자력 관련 계약 실적(8점)	3건 이상	8점	
			1건 이상	5점	
	2. 사업 수주 노력(4점)	1. 원자력 관련 수출 달성 기업	건당 1점	2점	계약/납품 관련서류, (기간 제한없이 계약, 납품 모두 인정)
		2. 국내외 전시/시장개척단 참여	건당 1점	2점	최근 3년 실적
5. 가점 항목	1. 국가/공공 기관 단체 포상(5점)	1. 품질/안전분야	건별 1점	3점	최근 3년 실적
		2. 기타 분야	건별 0.5점	2점	
6. 감점 항목	1. 부정당업체 (-5점)	1. 한수원 조달처 등재 기준	해당여부 유/무	-5점	최근 3년 기준

※ 각 항목별 제출서류의 인정 기간은 신청서 상의 신청일로부터임.

**별지1****원전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인증제도-별지-01

**원전기업 인증 신청서**  
**([ ]신규 [ ]연장 [ ]재발급 [ ]재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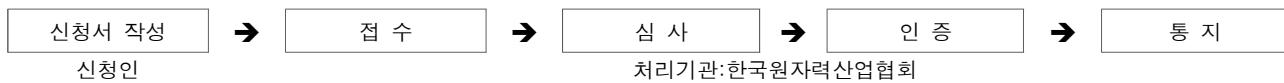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업규모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	
	홈페이지	SNS	
담당자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위와 같이 원전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기 발급 원전기업 인증서(유효기간 연장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만 제출)	
6. 그 밖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기재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7. (별지 제3호) 원전기업 인증 연장진단표 (연장 신청 시)	

**처리절차**

처리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2024. 5. 9. 개정

**별지2****원전기업 인증 자체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인증제도-별지-02

**원전기업 인증 자체심사표****□ 평가 총괄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심사지표	배점	득점
1. 원자력 안전 리더십 (30점)	1.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	1. 원전기업 인증제도 인증교육	10	
		2. 원자력 품질·안전 자체 집합교육	5	
		3. 원자력 품질·안전 외부 위탁교육	5	
	2. 안전문화 정착 노력	1. 시스템/제도	5	
		2. 시스템/제도 시행	5	
	2. 사업 수행 역량 (40점)	1. 기술역량	10	
		2. 자체 기술교육	10	
		1. 부채 비율	2	
		2. 유동 비율	2	
		3.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	
		1. ERP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3	
3. 업무 개선 노력 (10점)	3. IT 지원 역량	2. 홈페이지	2	
		3. SNS 채널	1	
	1. 내부 실적	1. 품질/안전/기술분야 업무개선 실적	5	
		2. 연구개발 실적	2	
	2. 외부 실적	1.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3	
4. 원전 산업 기여도 (20점)	1. 동반성장 노력	1.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	8	
		2. 원자력 관련 계약	8	
	2. 사업 수주 노력	1. 원자력 관련 수출 달성	2	
		2. 국내외 전시/시장개척단 참여	2	
심사부문 합계			100	
5. 가점	1. 국가/공공기관 단체 포상	1. 품질/안전분야	3	
		2. 기타 분야	2	
6. 감점	1. 부정당업체	1. 한수원 조달처 등재 기준	-5	
총점			100±5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2024. 5. 9. 개정

[별지 제3호서식]

인증제도-별지-03

## 원전기업 인증 연장진단표

평가지표	평 가 구 분		작 성 및 확 인
1. 원자력 안전 리더십 (40점)	경영진의 원전 안전성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 노력도		<input type="radio"/> 안전문화 관련 시스템 및 제도 시행 실적 ('00.0.0~.) [별첨] 체크리스트,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사본
	평가 기준	최근 2년 내 안전문화제도 운영 중 (40점)	
		안전문화제도를 일부 운영 중 (20점)	
		안전문화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0점)	
2. 사업수행 역량 (40점)	품질·안전 분야 외 원자력분야 사업유지 역량		<input type="radio"/> 원자력 유관 기술교육 이수 현황 ('00.~'00, 총 00명) [별첨] 교육생 명단, 교육 수료증, 시행계획서 등
	교육 시행 (20점)	최근 2년 내 기술교육 이수 또는 시행 (20점)	
		기술교육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예정) (10점)	
		기술교육 이수 또는 시행이 되지 않았다 (0점)	
3. 업무개선 노력 (10점)	경영 역량 (20점)	BB0 이상 (20점)	<input type="radio"/> 유효기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서상 신용등급 [별첨] 기업신용평가서
		BB- (10점)	
		BB- 미만 (0점)	
4. 원전산업 기여도 (10점)	품질·안전·기술 분야 업무 또는 연구개발 실적		<input type="radio"/> 품질·안전·기술 분야 개선활동 및 연구개발 실적 현황 ('00.0.0~.) [별첨] 실적리스트, 개선·연구결과 보고서 등
	평가 기준	최근 2년 내 업무개선 또는 연구개발 실적 발생 (10점)	
		개선 또는 개발 실적이 전혀 없다 (0점)	
5. 가점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계약 실적 및 수출 기여도		<input type="radio"/>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계약 실적 현황 ('00.0.0~.) [별첨]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평가 기준	최근 2년 내 원자력 관련 납품·계약 실적 유지 (10점)	
		실적 일부 유지 (5점)	
		납품·계약 실적이 전혀 없다 (0점)	
6. 감점	국가/공공기관 단체 포상 (전별 2점 / 최대 4점)		<input type="radio"/> 국가, 정부, 기관 포상 (수상자가 기업 또는 대표) [별첨] 표창장, 상장 등 사본
	부정당업체 (한수원 조달처 등재 시 -5점)		<input type="radio"/> 한수원 부정당업체로 등재되어 입찰참여자격 제한 시